

의안번호	제 378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9 월 일 (제 314 회)

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2년 8월 3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7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2년 8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.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5조)
  - (당초)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(변경) 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
-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 마련(안 제9조)
  -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**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25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2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2호, 3호, 4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 7호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7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 제1호 중 “제2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4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1항, 제2항 중 “매 회계 연도 마다”를 “회계 연도 마다”로 한다.

제8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0조(종전의 제9조)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」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제25조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기금구성)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</li> <li>2. 「환경개선비용부담법」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</li> <li>3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</li> <li>4.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</li> <li>5.~6.(생략)</li> <li>7. 기타 수입금</li> </ol>	<p>제2조(기금구성)----- ----- ----- 1.(생략) 2.-----따른----- ----- 3.----- -----따른----- ----- 4.-----따른----- ----- 5.~6.(생략) 7. 그 밖의-----</p>
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기금중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</p>	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7조에 따라 -----</p>

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4조(기금의 사용 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「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」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
2. ~ 5. (생략)
6.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

제5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하되, 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2. (생략)
3.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
제6조(회의)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기금의 사용 등) 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제 24조에 따른 -----
2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 -----

제5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-----  
-.

② 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-----

제6조(회의) ① -----  
-----  
-----

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② (생략)

제8조(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) ①  
도지사는 매 회계 연도마다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
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  
매 회계 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  
하여야 한다.

<신설>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 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 
정한다.

-----  
----- 1 이상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) ①  
도지사는 회계 연도 마다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-----  
-----  
회계 연도마다-----  
-----.

제9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 
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 
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-----시행에  
-----  
-----.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환경정책기본법('90. 8. 1제정)

제37조(환경정책위원회)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1.4.5>

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('05. 8. 4제정)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('05. 12. 28제정)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